

청약시 유의사항

▶ 보험에 가입하실 때

- ①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 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③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본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④ 직업의 종류는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규정에 의거 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⑤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시가와 같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납입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줄어든 비율만큼 적게 보상받고 또 시가보다 높게 정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 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⑥ 기재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하실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골동품 등을 별도로 기재하셔야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으시면 청약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청약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의 구조 또는 용도 변경,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경우, 이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등)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⑤ 계약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① 화재(화재를 담보하는 장기보험 포함)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 보험입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④ 또는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⑤ 다만, 재조달 가능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선택하시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 재구입 비용이 보상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별도의 질문표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이체 관련 사항

본인계좌 정보를 기재한 경우(가상계좌 제외). 이 계좌의 보장은 약관에 의거하여 초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됩니다.
또한, 해당 계좌 정보는 CMS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결제원에 실시간 이체 정상동록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계좌 정보와 동일한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급 보험금안내]

-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료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하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 참조]
- 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상 담당자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운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종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액, 납입일자 및 선택계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보험의 경우 관련법규(소득세법 제52조 1항 2호)에 의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

▶ 사망보험금수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수의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의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의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증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안내(3대기본지키기)

- ① 자필서명
- ② 약관 및 청약서 부분전달
- ③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보험회사의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드립니다.

▶ 보험모집질서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인터넷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팩스: 3702-8691
인터넷 : www.knia.or.kr
- 한화손해보험 : 전화 : 1566-8000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조회 안내]

-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료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하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 참조]

- 가지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상 담당자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청약철회 청구서	본인은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며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은행 계좌 번호 :	월 일 (예금주는 반드시 계약자와 동일인)
	계약자 : (인) ()	피보험자 : (인) ()	-		